

1.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재해대책기금 운용조례의 일부내용이 지방재정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
- 기금표준조례안(재경 13300-147, 1998. 4. 22)에 준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 기금을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토록 규정(안 제2조)
- 기금의 용도를 조례안에 규정하여 타용도의 사용을 예방(안 제4조)
-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토록 하고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구분하여 별도계좌를 설치토록 규정(안 제5조)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안 제7, 8조)
-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의 결산내용을 구체화하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안 제11조, 제12조)

□ 검토보고

- 동 조례안은 현행조례가 지방재정법 및 자연재해대책법등에 위배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전부를 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 재정경제부에서 시달된 기금 표준조례안을 적용하여 조문체계등에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제7조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있어 시의원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어 기금에 대한 사전 의회의 적절한 통제를 위해 위원회의 일정인원을 시의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는 파주시의 유사기금과 관련한 조례에 시의원을 위촉하여 포함시키는 것보다 형평이 맞다고 사료됨.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위원회설치 및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위원인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장, 시의원 3인과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